

#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44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5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주요내용을 조례에 반영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·운영 등과 관련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별표 규정 등을 삭제하고 적용례를 신설

## □ 주요내용

- 제2조(정의)
  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신설된 조항에 따른 각 호 신설
- 제3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)제2항
  - 「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」 제4조제5항과 관련한 <별표 1>과 현행 조례의 <별표> 문건이 상이하여 불임을 삭제하고,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야하는 설치비용 산정방법은 「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」 제4조제5항 및 영 별표 1을 따르되, 영 별표 1 제2호가목4) 및 같은 호 나목4)에서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.29 신설
- ※ 영 : 「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」
- 제5장 주민지원기금 조성 신설
  -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필요한 각항 신설
- 제18조 ~ 제21조 신설
  - 제18조 기금의 조성

-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재원 비율 신설
  - 제19조 기금의 운용 · 관리 등
  - 제20조 기금의 심의
- 조례 제18조(시행규칙)를 조례 제22조로 이전
- 별표삭제
- 부칙 제2조(적용례) 신설

□ 개정 조례안 : 【붙임 1】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□ 관련법령 발췌서 : 【붙임 3】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【붙임 4】

□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○ 예고기간 : 2024. 3. 13. ~ 4. 2.(2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방침결재문 : 【붙임 6】

## 【붙임 1】

#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안산시자원회수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에 폐기물” 을 “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자원회수시설,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, 편익시설”을 “제1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”로, “제11조제1항 각 호의 법인·단체 또는”을 “법인·단체 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주민지원협의체”(이하 “지원협의체”라 한다)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가목의(2)의 시설에 대해 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를 말한다.

7. “주민지원기금”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의(2)의 시설에 대해 법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.

8. “주변영향지역”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의(2)의 시설에 대해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결정·고시한 지역을 말한다.

9. “주민편익시설” 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의(2)의 시설에 대해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“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” (이하 “납부금액”이라 한다)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납부금액을 산정할 때는 영 제4조제5항 및 영 별표 1을 따르되, 영 별표 1 제2호가목4) 및 같은 호 나목4)에서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.29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”을 “납부금액”으로, “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”을 “납부금액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본문 중 “폐기물운반차량”을 “폐기물 반입차량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운반차량”을 “반입차량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.
- ④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

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운반차량”을 “반입차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7조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7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4호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4호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”를 “지원협의체”로, “협의체에서”를 “지원협의체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따른 안산시”를 “따라 안산시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선정함에 있어”를 “선정할 때”로 한다.

제5장(제18조부터 제21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제5장 주민지원기금 조성

제18조(기금의 조성)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.

②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, 시설의 종류·규모,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,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,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.

제19조(기금의 운용·관리 등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·관리하되

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.

② 기금은 「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.

제20조(기금의 심의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심의는 「안산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한다.

②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: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과장

2. 기금출납원: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팀장

제21조(주변영향지역의 지원) ① 기금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은 법

제22조 및 영 제27조에 따른다.

②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사업”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,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

2.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 결손 충당금

3. 제9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

4.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

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적용한다.

소관 실·과		자원순환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자원순환과장 박 수 미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자원시설팀장 김 영 학
	담당자 성명·전화	정 재 웅 (행정 1582)

**[붙임 2]**

**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“폐기물 반입차량” 이란 <u>안산시자원회수시설</u> 및 <u>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</u> 에 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.	4. ----- <u>폐기물처리시설</u> 에 폐기물----- -----. -----.
5. “수탁기관” 이란 <u>자원회수시설</u> , <u>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</u> ,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<u>제11조제1항 각 호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</u> 을 말한다.	5. ----- <u>제11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</u> ----- ----- ----- <u>법인·단체</u> <u>또는</u> ----- --.
<u>&lt;신 설&gt;</u>	6. “주민지원협의체” (이하 “지원 협의체” 라 한다)란 「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가목의(2)의 시설에 대해 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를 말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7. “주민지원기금” 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의(2)의 시설에 대해 법 제21조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지원

## <신 설>

제3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등) ①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폐기물 처리 시설부지의 매입과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고, 각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와 같다.

제4조(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)

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

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.

8. “주변영향지역” 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의(2)의 시설에 대해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결정·고시한 지역을 말한다.

9. “주민편익시설” 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의(2)의 시설에 대해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등)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“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” (이하 “납부금액”이라 한다)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납부금액을 산정할 때는 영 제4조제5항 및 영 별표 1을 따르되, 영 별표 1 제2호가목4) 및 같은 호 나목4)에서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.29로 한다.

제4조(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)

① 납부금액-----

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7조(반입허가 및 손실보상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운반차량의 정면 우측하단에 부착하여야 하며, 미부착 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이 직접 수거한 가연성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〈신 설〉

〈신 설〉

제8조(반입의 제한) 시장은 제7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소속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보유한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.

1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

-----  
-----  
--납부금액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반입허가 및 손실보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폐기물 반입차량-----  
-----  
-----.

-----반입차량-----  
-----.

③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.

④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(반입의 제한) -----  
-----  
--반입차량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7조-----  
-----

2. 불연성폐기물 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한 경우

3. ~ 7. (생 략)

제9조(주민감시요원) ① 시장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(이하 “주민감시요원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에게 「안산시 생활임금 조례」에 따른 안산시 생활임금 고시에 준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

② · ③ (생 략)

〈신 설〉

〈신 설〉

〈신 설〉

2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4호

3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주민감시요원) ① --- 지원협의체 ---  
-----  
-----  
----- 지원협의체에서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.

② ---  
-----  
----- 따라 안산시-----  
-----.

제12조(수탁기관 선정) ① ---  
----- 선정할 때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5장 주민지원기금 조성

제18조(기금의 조성)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.

②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비율” 이란, 시설의 종류·규모,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,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

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,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.

<신 설>

제19조(기금의 운용·관리 등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·관리되며,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.

② 기금은 「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20조(기금의 심의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심의는 「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한다.

②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: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과장

2. 기금출납원: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팀장

<신 설>

제21조(주변영향지역의 지원) ① 기금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은 법 제22조 및 영 제27조에 따른다.

②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사업”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신 설>

<신 설>

1.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

서 홍보활동,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

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

<신 설>

2.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 결손 충

당금

<신 설>

3. 제9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에게

지급하는 수당

<신 설>

4.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

고 인정되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

거쳐 결정된 사업

제18조 (생 략)

제22조 (현행 제18조와 같음)